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6월 25일, 임오경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6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2. 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2.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오경 의원)

한복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한류열풍 속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임.

한복은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절기와 의례 시에만 입는 전통의상으로만 인식되어 일상 속에서 한복을 입는 사람들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음.

최근 한복의 심미적 디자인을 현대 패션과 접목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한복 수요 급감과 한복산업의 영세성, 인력 고령화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한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경향에 맞추어 한복을 계승·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복문화산업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필요성

한복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담은 의복이자 고유한 전통문화 자산으로, 실용적·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드라마·케이팝 등[1] 한류의 산업적 가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2007년 정부는 한복 등을 전통문화 핵심분야로 선정하여 생활화·산업화·세계화하기 위한 「'한(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2]을 수립·시행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주축으로 현재까지 한복 관련 육성·지원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1) 일례로 한복을 활용한 유명 아이돌의 퍼포먼스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은 사례 등이 있음.
*「한복 입은 블랙핑크, 美 NBC '지미팰런쇼'서 신곡.."가장 핫한 그룹"」(쿠키뉴스, 2020.06.28.)

2) 「'한(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은 한복, 한글, 한식, 한옥, 한지, 한국음악을 6대 핵심분야로 설정하여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된 5개년(2007년부터 2011년) 종합계획으로, 2005년에 수립된 '한브랜드' 지원 정책을 보다 확대하여 '한스타일'로 브랜드화하였음.

[표 1] 한스타일 육성지원 현황 개요

ㅇ사 업 명: 한스타일 육성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ㅇ시작년도: 2006년
ㅇ주요내용: 전통문화자원 대표분야(한복, 한지) 지원, 한식문화 진흥기반 구축, 지역전통한식 발굴 및 확산 등

ㅇ예산현황

세부내역	2022년 계획현액	2023년 계획현액	2024년 계획현액
□한스타일 육성지원	125.7억원	113.1억원	101.6억원
○전통문화자원 대표분야 육성지원	112.7억원	113.1억원	101.6억원
-한복분야 육성지원	87.9억원	83.5	72.9억원
-한지분야 육성지원	14.5억원	14.5	15.5억원
-한식분야 육성지원	8.1억원	13.0	11.1억원
-전통문화포털 운영 및 활성화	2.1억원	2.1	2.1억원
○한식당 한국적 이미지 강화	13억원	-	-

또한 2022년 1월 정부는 “전통문화 산업 자생적 성장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추진하면서, 한복·한지를 ‘중점 육성 분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전통문화상품 전체의 수요를 함께 견인할 수 있는 선도그룹으로 지정하는 등 한복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왔음.

그러나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한복산업의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0년 제조업체 3,737개소, 종사자 7,550명, 매출액 2,583억원에서 2020년 제조업체 2,099개소, 종사자 6,053명, 매출액 1,420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표 2] 한복 산업 규모 추이

연도	2010년	2015년	2020년
한복제조업(개소)	3,737	2,666	2,099
한복소매업(개소)	1,550	1,444	1,509
한복산업 종사자(명)	7,550	6,053	4,844
한복산업 매출액(백만원)	258,341	238,701	142,038

*자료:「2022 한복산업 실태조사」, 2023.3.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제정안은 한복문화산업 지원·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갖는 한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음에도 한복산업이 점차 위축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복산업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관의 기능이 기존 기관[3]과 중복된다는 점, 조세 감면 근거는 개별법으로 규정하기보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현재 전통문화의 진흥과 관련하여 한옥·전통주 등 10개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3)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기타공공기관), 한국한복진흥원(경상북도 출연기관)

[표 3] 전통문화 관련 개별 법률 현황

법률명	제정년도	소관 부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2007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무예진흥법」	2008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0	농림축산식품부
「김치산업 진흥법」	2011	농림축산식품부
「씨름 진흥법」	2012	문화체육관광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4	국토교통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2015	농림축산식품부
「공예문화산업진흥법」	2015	문화체육관광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2018	문화체육관광부
「한식진흥법」	2019	농림축산식품부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총 4장,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① 기본계획 수립, ② 실태조사, ③ 한복진흥원 설립, ④ 교육지원, 한복문화주간, 조세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산업진흥법의 구성과 비교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임.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산업 발전	제5조(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실태조사) 제7조(연차보고서 제출) 제8조(한복진흥원 설립)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우수사례의 발굴 등)
제3장 한복문화 및 한복산업 활성화	제11조(한복문화의 교육 지원) 제12조(전시관 등 설치·운영 지원) 제13조(한복문화 관련 행사의 활성화) 제14조(한복문화주간) 제15조(한복을 착용한 사람의 우대) 제16조(국제교류 및 협력) 제17조(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제18조(한복 연구개발 촉진 등) 제19조(창업 및 제작 지원) 제20조(조세의 감면)
제4장 보칙	제21조(청문)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부 칙	시행일

(2) 조문별 검토

가. 총칙 규정

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한복문화의 진흥 및 한복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韓服)”이란 한국의 역사적 전통성을 지닌 옷으로 바지·저고리, 치마·저고리, 두루마기, 조끼, 마고자를 비롯한 의복과 장신구 등 한국의 전통복식(服飾)과 이를 계승·발전시킨 복식을 말한다. 2. “한복문화”란 한복 디자인·기술·관습·모양·행위·의식 등 한복과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 온 유형·무형의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한복문화산업”이란 한복 또는 한복문화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 및 소비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한복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한복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으로 한복의 가치를 인식하고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한복문화의 진흥 및 한복문화산업의 발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임.

안 제2조는 한복, 한복문화 및 한복문화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법해석을 명확히 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보임.

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사항으로 한복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규정이라 판단됨.

다만, 간결한 표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수정의견 >

제 정 안	수정의견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한복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한복 ---------- ----------진흥에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안 제4조는 제정안이 한복문화산업에 대해 일반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도록 하는 통상적인 내용으로, 분야별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타 입법례들과 비교해볼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유사 입법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 정 안
제5조(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3. 한복문화 교육 4. 한복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5. 한복문화산업의 홍보 및 국제교류 6.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재원 확보 7. 그 밖에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한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복문화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제7조(연차보고서 제출) ① 정부는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보고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시행, 한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함.

첫째 안 제5조제5항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나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다만, 협조 요청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까지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제정안의 각종 시책을 매개로 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정규제로 남용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협조요청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복문화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임.

둘째, 안 제6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효과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한복시장규모와 특성 등에 대한 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안 제6조제2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데, 이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다른 입법례[4]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셋째, 안 제7조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복문화산업 진흥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법안 대부분은 기본법[5]으로, 개별 분야 중에서는 국민 기초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전기 외에 입법례를 찾기 어려우며, 이 경우에도 추진실적까지 제출하지는 않고 있으며,

한복문화산업은 매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이므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제출하게 된다면 단기 실적 창출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동 조항 신설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4) **「노인복지법」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국악진흥법」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5) 과학기술기본법, 산림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관광기본법, 문화기본법 등

다. 한복진흥원의 설립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 정 안
제8조(한복진흥원 설립) ①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복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2. 한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한복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제공 4. 한복문화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와 국제교류 5.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사항 ⑥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소 또는 대학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제 정 안
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우수사례의 발굴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한복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 등을 통하여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한복진흥원 설립, 전문인력의 양성, 우수사례의 발굴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먼저, 안 제8조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의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한복진흥원을 설립하려는 내용임.

이에 대해서는 안 제9조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안 제18조의 전담기관과 안 제8조의 한복진흥원의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하는 등 조문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6)]

6) 이를 위한 조정방안으로는, 안 제8조(한복진흥원 설립)의 내용을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통합하여 대체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방안 등이 있음.

[표 4] 제정안의 한복진흥원·전문인력 양성기관·전담기관의 기능

한복진흥원 (안 제8조)	전문인력양성기관 (안 제9조)	전담기관 (안 제18조)
1.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2. 한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한복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제공 4. 한복문화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와 국제교류 5.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사항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한복 디자인·소재의 연구개발 및 상품화 등에 필요한 사업

한편, 기획재정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내 한복진흥센터(2014년 출범, 2024년 예산 79억원)에서 한복문화와 산업에 대한 사업을 기수행하고 있고,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한 한국한복진흥원(건립비 총 192억원, 국비 50%, 2021년 4월 개원)에서도 관련 업무 추진 중이므로 기관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경상북도도 상기 의견과 유사한 취지에서 '한복진흥원'을 신설할 경우 기존 '한국한복진흥원'과 업무 중첩의 문제, 예산 중복, 비효율적 사업 집행 등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입장임.

다음으로, 안 제10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이에 대해서는 제2장(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산업 발전)이 한복문화 지원 체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후술할 제3장(한복문화 및 한복산업 활성화)은 한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10조의 우수사례 발굴 등의 내용은 제3장에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음.

라. 한복문화 및 한복산업 활성화(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복문화 교육 지원, 전시관 설치・운영 지원, 한복문화주간 운영, 민간단체 지원, 조세 감면 등의 지원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1조(한복문화의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의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한복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한복문화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한복문화 관련 교육과정 개설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한복문화 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시관 등 설치·운영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한복문화 관련 행사의 활성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한복 착용 등 전통문화 및 한복문화산업 관련 행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주최 행사에서 한복을 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 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한복문화주간)** ① 한복의 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한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복문화주간'을 한복 입는 날로 한다. ② 한복문화주간의 운영과 그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한복을 착용한 사람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국·공립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와 감면 요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국제교류 및 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대학·연구소, 그 밖의 해외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한복문화산업 세계화

제 정 안
에 필요한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제18조(한복 연구개발 촉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한복 디자인·소재의 연구개발 및 상품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연구개발능력 등을 갖춘 한복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진흥원을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 및 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자 및 투자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한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한복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제작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복 수입을 제외한 한복문화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정안에 규정된 각종 시책들은 아래의 표와 같이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존예산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정안은 이러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확충 및 사업확대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표 5] 제정안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현황

제정안	현행 사업
한복문화의 교육 지원 (안 제11조)	ㅇ초중고 한복문화교육, 대학생 교육(2022년 5억원)
전시관 등 설치·운영 지원 (안 제12조)	ㅇ지방자치단체 연계 전시, 체험 등 지원(2022년 7억 4,000만원)
한복문화 관련 행사의 활성화 (안 제13조)	ㅇ한복문화홍보(2022년 2억 6,600만원)
한복문화주간 (안 제14조)	ㅇ한복문화주간(2022년 8억원)
국제교류 및 협력 (안 제16조)	ㅇ한복분야 해외교류(2022년 4억원)
한복 연구개발 촉진 등 (안 제18조)	ㅇ한류 문화예술인 협업 한복문화상품 개발(2022년 10억원) 등
창업 및 제작 지원 (안 제19조)	ㅇ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2022년 35억 5,000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만, 안 제1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복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이에 대해서는, 제정안이 전시관 등 설치·운영 지원(제12조), 한복문화 관련 행사의 활성화(안 제13조)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조항에서 구체적인 사항별로 민간단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17조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다음, 안 제20조는 한복문화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조세특례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조[7]에서 동법 및「국세기본법」등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감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동시에 필요한 사항임.

이러한 취지에서 기획재정부는 일부 개별법에 세제지원에 대한 재량규정을 허용하고 그러한 경향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국세의 비과세·감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가 저해될 수 있으므로 동 조항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

7)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 25. (생 략)

행정안전부도 개별법상 규정된 지방세 감면 규정은 선언적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지방세 특례규정 신설 등 감면 여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항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각 개별법에서는 지원하는 산업분야에 대한 조세감면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분야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표현하는 입법례가 다수 있다는 측면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6] 조세 감면 관련 유사 입법례

법률명	규정
「건축서비스법」	**제32조(조세의 감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1조(조세의 감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31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식품산업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마. 보칙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개정안은 청문과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2조).

제 정 안
제21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먼저, 안 제21조는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두는 내용인데,

지정 취소 처분과 같이 처분 상대방에게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청문을 필요 절차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8] 전담기관 등의 지정 취소 시에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8)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615

> 처분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정도가 크거나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청문을 필요절차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다음으로, 안 제22조는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다만,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권한의 위임·위탁과 구분하기 위하여 '권한'이 아닌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9]하고 있고,

행정기관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조치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일부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는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 수정의견 >

제 정 안	수정의견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복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9)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0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 ·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기타 사항

없 음.